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시 설립기준 완화 >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9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시 설립기준 완화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30.
3. 회 부 일 :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시 설립기준 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 <u>설립(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u> ----- ----- -----.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생 략)
- ③ (생 략)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3항-----

-----.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제4조제3항-----

 2. 제4조제4항-----

 3. -----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구체적인 설립기준은 현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일정 규모의 교육·지원·연구·부속시설 등 교사(校舍),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이러한 설립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의 대학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은 학교 ‘이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치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위치변경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인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됨.

□ 학교 위치변경시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 설립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 산정시 최소 학생정원 기준은 설립시 기준 1,000명 보다 적은 400명을 적용하는 등 설립기준 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또한 대학이 일부의 위치를 산업단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로 변경하는 경우, 교사·교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교사를 임차하거나 일부 소유하는 경우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함.

[학교 이전(위치변경) 개요]

구분	내용																																						
신청 사유	(법 제4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 • 신청자: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 • 사유: 학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u>위치</u> , 부설학교 계획서를 <u>변경</u> 하려는 경우																																						
인가 절차	(법 제4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7항, 부령 제7조) • 변경인가 신청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부장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준	(부령 제7조) • 위치변경계획서 제출 전 규정 제2조의7, 제4조,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 교지를 갖추어야 함																																						
	(규정 제9조제3항, 부령 제7조) • <u>운영 중인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u> -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u>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 설립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u> * 설립시 기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 <u>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 산정시 최소 학생정원 기준은 400명</u> * 설립시 기준: 1,000명																																						
	(규정 제2조의7) • <u>대학(대학원대학 제외)이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 가능</u> - 교사: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 교지: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 <u>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u>																																						
비고	<설립기준> (규정 제2조제6항) •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함(일부 예외 인정) (규정 제4조) • 교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 (단위: m²)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thead><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5">계열별</th></tr><tr><th>인문·사회</th><th>자연과학</th><th>공학</th><th>예·체능</th><th>의학</th></tr></thead><tbody><tr><td rowspan="2">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td><td>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td><td>12</td><td>17</td><td>20</td><td>19</td><td>20</td></tr><tr><td>운영 중인 대학</td><td>12</td><td colspan="4">14</td></tr></tbody></table>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 적용 (규정 제5조) • 교지 [교지기준면적] (단위: m²)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tbody><tr><td>학생정원</td><td>400명 이하</td><td>400명 초과~1,000명 미만</td><td>1,000명 이상</td></tr><tr><td>면 적</td><td>교사건축면적 이상</td><td>교사기준면적 이상</td><td>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td></tr></tbody></table>						구분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12	17	20	19	20	운영 중인 대학	12	14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 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구분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12	17	20	19	20																																	
	운영 중인 대학	12	14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 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주: (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 개정안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이전하는 경우 완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령에서 산업계가 실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이 산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이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의 설립기준은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인가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 설립기준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적정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개정안의 설립기준 완화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의 정의와 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³⁾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3)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정의·지원 관련 조항은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련 조항 참조

규정되는 대학의 이전 관련 설립기준 완화 근거를 「인구감소지역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이에 대한 교육시설 이전 등 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중 출생률 등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각급 학교 등 교육 시설 확충,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법」은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교지·교사 임차를 인정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하위법령(「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범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의 공론화 과정을 선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련 조항

○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주: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2023년 7월 1일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 인구감소지역 정의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인구감소지역 교육시설 이전 등 지원 관련 조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체육 시설의 설치·유치 지원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2

대학 위치변경 현황(2005년 이후)

연번	학교명	이전 위치	기존 위치	이전 형태	이전일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 천안	충남 천안	일부	'06.03.01.
2	한남대학교	대전 유성	대전 대덕	일부	'05.09.01.
3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 연수	인천 강화	일부	'08.09.01.
4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금정	부산 남구	전부	'15.03.01.
5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강북	서울 성북	일부	'10.03.01.
6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강원 춘천	서울 서대문	일부	'09.03.01.
7	동국대학교	경기 고양	서울 중구	일부	'11.03.01.
8	연세대학교	인천 연수	서울 서대문	일부	'11.03.01.
9	동서대학교	부산 부산진	부산 사상	일부	'10.09.01.
10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	경북 경산	일부	'11.03.01.
11	세한(대불)대학교	충남 당진	전남 영암	일부	'13.03.01.
12	중부대학교	경기 고양	충남 금산	일부	'15.03.01.
13	경동대학교	경기 양주	강원 고성	일부	'14.03.01.
14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 서초	경기 화성	전부	'11.09.01.
15	청운대학교	인천 남구	충남 홍성	일부	'13.03.01.
16	우석대학교(제2캠퍼스)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일부	'12.03.01., '14.03.01.
17	우석대학교(중화산캠퍼스)	전북 전주	전북 완산	일부	'12.09.01., '13.09.01.
18	유원대학교	충남 아산	충북 영동	일부	'13.03.01., '15.09.01., '16.03.01.
19	예원예술대학교	경기 양주	전북 임실	일부	'12.03.01., '13.03.01., '14.03.01.
20	순천향대학교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일부	'13.03.01.
21	동양대학교	경기 동두천	경북 영주	일부	'16.03.01., '16.04.04.
22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충남 천안	충남 천안	일부	'15.03.01., '15.09.01., '15.12.10.
23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동대문	전부	'15.01.26.
24	을지대학교	경기 의정부	대전, 경기성남	일부	'21.03.01.
25	호서대학교	서울 서초	서울 서초	일부	'16.03.01.
26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 강북	경기 파주	전부	'17.04.13.
27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서	일부	'19.03.01.
28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	전부	'20.03.01.
29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 연수	인천 연수	전부	'20.05.19.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천 연수	경기 용인	일부	'27.03.01.(예정)
31	홍익대학교	경기 화성	서울 마포구	일부	'29.03.01.(예정)

주: 최근 20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위치변경) 사례는 없음
자료: 교육부